

2 0 1 7 회 계 연 도 서 울 특 별 시
학 교 안 전 공 제 및 사 고 예 방 기 금 결 산 승 인 안

검 토 보 고 서

I . 제 안 경 위

- 「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」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8년 5월 31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II .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개요
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1)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‘공제기금’ 이라 함)으로 같은 법 제15조2)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‘공제회’라 함)가 같은 법 제54조3)에 따라 관리·운용하는 기금임
-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현재액은 106억 8,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96억 9,100만원) 보다 9억 9,500만원(10.3%)

-
- 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- 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)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- 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·운용한다.

증가됨

〈표 2-1〉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현재액

(단위 : 백만원)

기금명	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E=A+B)
	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공제기금	9,691	995	7,966	6,971	10,686

-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운용계획현액은 178억원이나, 수입·지출 결산액은 운용계획현액 보다 △1억 4,300만원 감소한 176억 5,700만원으로 제출됨

〈표 2-2〉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결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				지 출			
항 목	계획현액 (A)	결 산 (B)	증 감 (B-A)	항 목	계획현액 (A)	결 산 (B)	증 감 (B-A)
합 계	17,800	17,657	△143	합 계	17,800	17,657	△143
전 입 금	5,673	5,776	103	비용자성 사 업 비	6,289	5,747	△542
보 조 금	1,857	1,857	0	인력운영비 (인건비)	930	870	△60
예치금회수 (잔기월금)	9,954	9,691	△263	기본경비 (물건비)	396	354	△42
이자수입	146	149	3	예 치 금 (차기월금)	10,185	10,686	501
기타수입	170	184	14				

Ⅲ. 검토의견

1. 수입결산

○ 2017회계연도 수입결산액은 176억 5,700만원으로 계획현액 (178억원) 대비 △1억 4,300만원 감소한 것임

〈표 3-1〉 공제기금 수입운용명세서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017회계연도				2016 결 산 (C)	직 전 회계연도 대 비 (B-C)	
		수 입 계 획 현 액 (A)	수 입 결 산 액 (B)	구 성 비	계 획 현 액 대 비 증 (B-A)			
합 계		17,800	17,657	100.0	△143	15,999	1,658	
전입금	소 계	5,673	5,776	32.7	103	5,734	42	
	공 제 료 수 입	5,673	5,776	32.7	0	5,674	102	
	교육금고기부금	0	0	0.0	0	60	△60	
보조금	소 계	1,857	1,857	10.5	0	12	1,845	
	공 제 급 지 원 액	1,672	1,672	9.5	0	0	1,672	
	교육활동참여자 공 제 료 지 원 금	18	18	0.1	0	12	6	
	학 교 안 전 사 고 피 해 자 상 담 지 원 금	167	167	1.0	0	0	167	
예치금회수	소 계	9,954	9,691	54.9	△263	10,029	△338	
	전 기 이 월 금	9,954	9,691	54.9	△263	10,014	△323	
	전년도 사고이월비	0	0	0.0	0	15	△15	
이수	자입	이 자 수 입 등	146	149	0.8	3	140	9
기수	타입	소 계	170	184	1.0	14	84	100
		소 방 수 익	120	120	0.7	0	20	100
		학 교 폭 력 구 상 금 회 수	50	64	0.4	14	64	0

○ 전년도말 기금 조성액인 예치금회수⁴⁾ 결산액은 96억 9,100만원으

4) 기금운용 상 금융기관 등에 예치되어 전년도에서 이월(사고이월 등 포함)된 자금

로 총 수입 결산액(176억 5,700만원)의 54.9%이며, 수입계획현액(99억 5,400만원) 보다 △2억 6,300만원 감소한 바,

- 2017년도 공제기금 운용계획⁵⁾ 수립 당시 직전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해 추정한 사용액⁶⁾(59억 8,500만원)이 실제 직전회계연도 공제기금 결산⁷⁾ 사용액(63억 800만원) 보다 증가(3억 2,300만원)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2〉 공제기금 예치금회수(전년도말 조성액) 비교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전년도말 조성액 (A)	전년도 중 증감액			전년도말 조성액 (E=A+B)
	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직전회계연도 결산	10,029	△338	5,970	6,308	9,691 (수입결산액)
직전회계연도 가결산	10,029	△75	5,910	5,985	9,954 (수입계획현액)
증 감	0	△263	60	323	△263

- 공제로 수입 결산액은 57억 7,6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(176억 5,700만원)의 32.7%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분 수입액⁸⁾(79억 6,600만원)의 72.5%에 해당함

- 공제료는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3항

5) 우리 의회에 2016.11.7.에 제출

6) 직전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비용자성사업비(공제사업비, 학교폭력지원사업비), 인건비, 기본경비 등 당연도분 지출액

7) 우리 의회에 2017.05.31.에 제출

8)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전입금(공제료수입), 보조금(공제급여지원금,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,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), 이자수입, 기타수입(소방수익, 학교폭력구상금회수) 등 당해연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E=A+B)
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9,691	995	<u>7,966</u>	6,971	10,686

및 제4항9)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, 공제급여의 지급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,

- 2017년도의 경우,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¹⁰⁾과 동일하게 결정하고 2017년도 공제료 단가를 적용시켜 공제료 수입(학교급별 공제료단가 × 학교급별 학생수)을 예상하였으나, 결산액(57억 7,600만원)은 수입계획현액(56억 7,300만원) 보다 증가(1억 300만원)되었음
- 동 수입항목의 결산액(57억 7,600만원)이 수입계획현액(56억 7,300만원) 보다 1억 300만원 증가된 것은 전체 학생 수의 결산인원(1,045,711명)이 계획인원(1,053,468명) 보다 △ 7,757명 감소되었으나 공제료 단가가 가장 높은 고등학생 수의 결산인원(284,324명)이 계획인원(273,359명) 보다 10,965명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
- 공제료 수입이 당해연도 조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

9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제료) 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,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공제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0)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(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)

(단위 : 원)

회계연도	유	초	중	고	평균
2017	1,940	3,370	6,840	8,510	5,165
2016	1,940	3,160	6,360	8,020	4,870
2015	1,860	2,940	5,920	7,210	4,483

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학생 수 추산에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3〉 학교급별 공제료수입 계획 대비 결산 현황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분	2017 계획(A)		2017 결산(B)		증감(B-A)	
	가입인원수	공제료수입	가입인원수	공제료수입	가입인원수	공제료수입
계	1,053,468	5,673	1,045,711	5,776	△7,757	103
유치원	91,026	177	85,078	165	△5,948	△12
초등학교	434,731	1,465	428,355	1,443	△6,376	△22
중학교	233,461	1,597	227,134	1,556	△6,327	△41
고등학교	273,359	2,326	284,324	2,477	10,965	151
특수 등	20,891	108	20,820	135	△71	27

○ **보조금 수입**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지원금 수입으로 교육 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¹¹⁾, 공제급여 지원금¹²⁾,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금¹³⁾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17회계연도 결산액은 18억 5,700만원으로 총 수입 결산액(176억 5,700만원)의 10.5%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분 수입액¹⁴⁾(79억 6,600만원)의 23.3%에 해당함

○ **이자 수입** 결산액은 1억 4,900만원으로 수입계획현액(1억 4,600

- 1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제료 지원금
 12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고액의 장해 및 유족급여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
 1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여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및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을 지원하는 지원금
 14) 2017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전입금(공제료수입), 보조금(공제급여지원금,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지원금,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금), 이자수입, 기타수입(소방수익, 학교폭력구상금회수) 등 당해연도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E=A+B)
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9,691	995	<u>7,966</u>	6,971	10,686

만원) 보다 300만원 증가하였고, 직전회계연도(1억 4,000만원) 보다 900만원(6.4%) 증가한 것으로

- 직전회계연도에 90억 1,400만원이었던 예치금 규모가 2017회계연도에는 101억 6,600만원으로 11억 5,200만원이 증가하여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수익률(1.3%)은 직전회계연도(1.2%) 보다 0.1%p 높아진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4〉 공제기금 이자수입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회계연도	예 금			정기예금(저축보험 포함)		기타예금	
	일평균잔액 (가=A+B)	총예금이자 ^{주1} (나=C+D)	수익률 (나/가)	일평균 잔액(A)	정기예금 이자(C)	일평균 잔액(B)	기타예금 이자(D)
2017	10,166	132 (100.0)	1.3	8,958	130 (98.5)	1,208	2 (1.5)
2016	9,014	114 (100.0)	1.2	8,384	113 (99.1)	630	1 (0.9)

주1. 수입운용명세서 이자수입(1억 4,900만원) 중 국세환급금 및 구상금이자수입 제외

○ 기타 수입 결산액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18조 제2항¹⁵⁾ 및 정관¹⁶⁾에 따른 수익사업인 소방안전점검 대행사업의 이익금 1억 2,000만원과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6,400만원을 합한 1억 8,400만원으로

- 소방안전점검 대행사업 이익금(1억 2,000만원)은 수입계획현액 (1억 2,000만원)과 일치하고, 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 구상금 (6,400만원)은 수입계획현액(5,000만원) 보다 1,400만원 증가된 것임

15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* 을 할 수 있다.

*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의5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
2. 소독·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
3.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16) 「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정관」 제5조의2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공제회는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사업
2. 학교시설에 대한 소독·청소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
3. 학교시설에 대한 보안·경비 사업
4. 학교체육시설(어린이놀이시설 포함)에 대한 안전검사 및 관리사업
5. 법 제2조의 교육활동으로서 국내·외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,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여행자공제사업
6.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2. 지출결산

- 2017회계연도 지출결산액은 176억 5,700만원으로 계획현액 (178억원) 대비 △1억 4,300만원 감소한 것임

〈표 3-5〉 공제기금 지출운용명세서

(단위 : 백만원, %)

항 목	세 부 내 역	2017회계연도				2016 결 산 (C)	직 전 회계연도 대 비 (B-C)	
		지 출 계 획 현 액 (A)	지 출 결 산 액 (B)		계 획 대 비 증 감 (B-A)			
				구 성 비				
합	계	17,800	17,657	100.0	△143	15,999	1,658	
비용자성 사업비	소 계	6,289	5,747	32.6	△542	5,199	548	
	공 제 사업비	소 계	6,001	5,666	32.1	△335	5,099	567
		사고보상비	5,617	5,344	30.3	△273	4,802	542
		소 송 및 의 료 자 문	176	164	0.9	△12	132	32
		사 업 비	208	158	0.9	△50	165	△7
	학교폭력피해지원	120	76	0.4	△44	100	△24	
	학 교 안 전 사 고 피 해 자 상 담 지 원	168	5	0.0	△163	0	5	
인 력 운 영 비	소 계	930	870	4.9	△60	718	152	
	급 여	790	754	4.3	△36	609	145	
	수 당	140	116	0.7	△24	109	7	
기 경 본 비	소 계	396	354	2.0	△42	391	△37	
	업 무 추 진 비	30	30	0.2	0	30	0	
	일 반 운 영 비	366	324	1.8	△42	361	△37	
예치금	차기 이월금	10,185	10,686	60.5	501	9,691	995	

○ **예치금**은 기금운용 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자금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초 지출계획현액(101억 8,500만원) 보다 5억 100만원이 증가된 106억 8,600만원으로 제출됨

- 동 지출항목의 결산액(106억 8,600만원)이 당초 계획(101억 8,500만원) 보다 증가(5억 100만원)한 것은 비용자성사업비·인력운영비·기본경비의 지출결산액(69억 7,100만원)이 지출계획현액(76억 1,500만원) 보다 감소(△6억 4,400만원)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검토됨

○ **비용자성사업비**는 당초 지출계획현액(62억 8,900만원) 보다 △5억 4,200만원 감소된 57억 4,700만원이 지출된 바, 사고보상비인 공제급여 지급규모¹⁷⁾ 및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지급규모가 당초 지출계획현액 보다 각각 △2억 7,300만원, △1억 6,300만원 감소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됨

- 2017회계연도의 경우, 비용자성사업비 집행액(57억 4,700만원)이 직전회계연도(51억 9,900만원) 보다 10.5%, 5억 4,8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공제급여 지급 증가(5억 4,200만원)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됨

• 공제급여 중 가장 큰 비중(67.8%)을 차지하는 요양급여(36억 2,100만원)의 경우, 직전회계연도 보다 지급건수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비급여 항목 진료비 추가 지급 등으로 직전회계연도

17) 계획 수립당시의 공제급여 지급규모(12,521건×평균 45만원) 보다 실제 결산시 공제급여 지급규모(12,585건×평균 42만원)가 줄어듦

(35억 1,200만원) 대비 1억 900만원 증가하고, 장애급여 (16억 7,800만원)의 경우 지급건수 증가로 직전회계연도(6억 9,200만원) 대비 9억 8,6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

〈표 3-6〉 공제급여 지급현황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 분	2017(A)		2016(B)		증 감(A-B)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합 계	12,585	5,344	12,783	4,802	△198	542
요양급여	12,538	3,621	12,756	3,512	△218	109
장애급여	45	1,678	24	692	21	986
간병급여	0	0	0	0	0	0
유족급여 ^{주1} (장의비)	2	45 (7)	2	597 (16)	0	△552 (△9)
위로금, 보전비용 등	0	0	1	1	△1	△1

주1. 유족급여 금액에는 ()안의 장의비가 포함됨

3. 기금 조성액

- 2017회계연도 말 공제기금 현재액은 106억 8,6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96억 9,100만원) 보다 9억 9,500만원(10.3%) 증가된 바,

〈표 3-7〉 2017회계연도말 공제기금 조성액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연도	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E=A+B)
	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2017	9,691	995	7,966	6,971	10,686

- 지난 2013회계연도 이후 당해연도 사용액이 당해연도 조성액을 초과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, 2017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이 당해연도 사용액을 초과하여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3-8〉 최근 5년간 연도말 공제기금 조성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회계연도	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(E=A+B)
		계(B=C-D)	조성액(C)	사용액(D)	
2017	9,691	995	7,966	6,971	10,686
2016	10,029	△338	5,970	6,308	9,691
2015	10,030	△1	6,123	6,124	10,029
2014	12,450	△2,420	5,543	7,963	10,030
2013	15,104	△2,654	4,858	7,512	12,450

- 다만, 2017회계연도 일시적인 서울시교육청 전입금 증가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이 증가하였으나, 2017회계연도 공제기금 사용액 (69억 7,100만원)의 76.7%를 차지하는 공제급여(53억 4,400만원)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¹⁸⁾하고 있어 향후 공제기금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기금 조성 규모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18) 공제급여 지급 규모 현황(2015~2017회계연도)

(단위 : 백만원, %)

회계연도	2017	2016	2015
사용액	6,971	6,308	6,124
공제급여 지급액	5,344	4,802	4,713
증감액	542	89	-
증감률	11.3	1.9	-